

운영규정의 개요

2026. 01. 01

○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(제7조)

1. 본원의 입소정원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주야간보호
이용정원	85명

2. 모집방법은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, 내방, 상담 전화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○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제8조)

1.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2. 이용수가 및 본인부담금,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역은 입소계약서를 참조한다.

구 분	주·야간보호(월 15일 이상 이용 20% 증액 기준)					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급여	2,512,900원	2,331,200원	1,528,200원	1,409,700원	1,208,900원	676,320원
본인부담금 (15%)	376,935원	349,680원	229,230원	211,460원	181,340원	101,450원
비급여	식대(2식) + 간식(1식) : 8,000원(일)					

3. 계약의 해지는 운영규정 제8조 6항에 따른다.

○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(제9조)

등급 또는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○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(제10조)

- 센터는 수급자(보호자)와 계약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·야간보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
- 비용부담(급여제공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)
수급자(보호자)는 본인 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며 시설은 납부금을 청구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.

○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한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

신체적 제한,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로 운영규정 제10조 5항과 같다.

○ 의료서비스처리절차

간호조무사의 활동, 협약의료기관진료, 병원진료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운영규정 제10조 6항과 같다.

○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(제11조)

시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으며 운영규정 11조 2항에 의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○ 인사·급여·고충처리

- 직원의 채용, 승진, 인사이동, 휴직, 복직, 징계는 운영규정 제12~15조와 같다.
- 직원의 급여지급시기, 임금, 수당, 상여금, 퇴직금은 운영규정 제16조와 같다.
- 직원의 포상 및 사기증진은 운영규정 제17조와 같다
- 직원의 고충처리 절차는 운영규정 제 21조와 같다.

○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(제40조)

운영규정 개정은 연1회, 사업변경, 공단지침변경, 직원 2/3 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, 직원 2/3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.



더 ~ 드림 재활 주간보호센터